

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법적 문제

양 희 석*

<차례> _____

- | | |
|--------------|-------------------------------|
| I . 서론 | Ⅲ.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관련 문제 |
| Ⅱ. 보험수익자의 특징 | Ⅳ. 결론 |
-

주제어 : 보험수익자의 결정, 상속인, 고유재산, 상속재산, 분할비율,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결격,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유류분

<국문초록>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문제된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지위 뿐 아니라 그 상속비율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은 이들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만 상법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되며 나머지 수익자들에 대해서는 면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 민법상 상속결격의 경우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보험의 선의성,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해당 법정상속인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비록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스스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

상속인 중 일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비록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면 이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준하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심각하게 해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긍정할 수 있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대상에 도 해당할 수 있다.

* 농협생명보험, 변호사

- 논문접수일(2017.11.21), 심사개시일(2017.12.23), 게재확정일(2017.12.27)

I. 서론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상법 제727조).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이며(상법 제730조), 상해보험계약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으로서(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39조).¹⁾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1) 일본보험법, 독일보험계약법의 해석은 노일석,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금융법연구 제7권 제2호, 2010, 197~198쪽 참조

우리 상법	개정전 일본상법	일본 보험법 (2008)	독일 보험계약법(2006)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제675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수익자가 제3자인 때는 그 제3자는 당연히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향수한다. 단,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그것으로 인해 확정된다. 제676조(보험수익자의 사망) ①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제42조(제3자를 위한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보험수익자는 당연히 당해 생명보험계약의 이익을 누린다. 제46조(보험수익자의 사망)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전원이 보험수익자로 된다.	제159조(수익자 지정) ①의문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또 그와 같이 지정된 제3자에 대신하여 다른 자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취소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는 보험자의 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취득한다. ③취소할 수 없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는 보험자의 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때에 취득한다. 제160조(수익자지정의 해석) ①보험수익자로 복수인이 지분을 정함이 없이 지정된 경우 이들은 균등하게 보험수익권을 가진다. 어느 보험수익자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분은 나머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한다. ②보험자의 급여가 보험계약자의 사망 후에 상속인에 대하여 행하여질 것이면, 의문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에 상속인이 될 자격 있는 자들이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의 포기는 보험수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보험수익권있는 제3자가 보험자의 급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한다. ④국고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때에는 국고는 제2항 1문의 보험수익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는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으나, 주로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도 함께 사망하므로 결국 수익자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고유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결격, 유류분과의 관계,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문제된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II. 보험수익자의 특정

1.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1)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타인의 생명보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다.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의 주체이며 제1차적 보험료지급의무자이므로 그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부여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²⁾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 유보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그 이익을 받으므로(상법 제639조 제2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유보하였거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상법 제733조 제2항, 제3항), 그 밖의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민법 제541조, 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³⁾).⁴⁾

2) 장경환,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불행사시의 보험수익자의 확정시점”,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학회지> 제41권, 1993, 230쪽

그러나 민법 제541조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일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임의로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 상법 제733조 제1항⁵⁾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008년 개정전 일본상법 제675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점과 비교하면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수익자의 보험이익에 대한 신뢰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우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장기여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 사정변경이 있음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가 특별히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지정·변경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지정·변경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⁶⁾

한편, 영미의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피보험이익(insurance interest)을 가져야 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피보험이익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법상 부부는 상대방이 증여, 상속,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제외하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1/2의 지분을 가지므로 보험료가 부부공동재산에서 지급되면 배우자는 보험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면 그러한 지정은 보험금의 1/2에 대해서만 유효성이 인정된다.⁷⁾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데, 입법론으로는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하여 배우자, 피부양자와 같이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한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⁸⁾

3) 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 양승규, 「보험법」 제5판, 2005, 459쪽

5)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6)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845쪽, 한기정, 「보험법」, 2017, 729쪽

7) 노일석,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금융법연구 제7권 제2호, 2010, 196쪽

8) 양승규, 전거서, 451~452쪽, 타인의 생명보험의 유효성에 관하여 영미는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어

(2) 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변경할 수도 있으나,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가족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변경할 수도 있다.⁹⁾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¹⁰⁾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비록 상속인이라고 지정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내연의 처와 같이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에 포함시키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별도의 의사를 하여 보험자가 지정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며,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가 보험수익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¹¹⁾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은 장기이므로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새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으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수익자 지정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보험수익자지정시설).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이 된다(보험사고발생시설).¹²⁾

떠난 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주의이교(利益主義),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우리나라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주의이다(同意主義).

- 9) 양승규, 전게서, 458쪽, 박세민, 「보험법」 제3판, 2017, 938쪽
 10)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안
 11) 정진욱,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27호 제2권, 2014, 175쪽, 독일 보험계약법 제170조 제2항에서는 "수익자가 미지정되거나 성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자 및 자녀에게 개입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사실혼관계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혼과 법률혼에 관하여 법적 효과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독일법의 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12) 양승규, 전게서, 458~459쪽, 박세민, 전게서, 934쪽, 한기정, 전게서, 734쪽, 임채웅,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2, 357~362쪽,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日最高判 1965. 2.2.(民集 19-1, 1)

2.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상속인과 피보험자의 상속인 중 누구를 보험수익자로 볼 것인가.

일본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독일보험계약법 제160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¹³⁾

반면, 우리 상법 제733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33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있어¹⁴⁾ 일본이나 독일과는 결론을 달리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인을 위한 것임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드러나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¹⁵⁾ 우리 상법에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보다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유족의 보호라는 면을 고려하여 보험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¹⁶⁾

따라서 만약,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 상법 제733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⁷⁾

13) 노일석, 전계논문, 205쪽

14) 양승규, 전게서, 460쪽, 한기정, 전게서, 730, 731쪽

15) 양승규, 전게서, 183쪽, 한기정, 전게서, 730쪽

16) 노일석, 전계논문, 206쪽

17)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1조에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중도 만기보험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질병·재해장해·입원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2015. 12. 29. 개정, 2000. 12. 18. 생명보험표준약관 제정 당시 제24조에서 조문위치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함)

3.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1)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은 장기이므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다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1문,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미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2문).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4항).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재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보험수익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던 보험계약자의 본래 의사를 존중하여 사망한 보험수익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그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정한 것이다.¹⁸⁾

상법 제733조 제3항의 재지정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당연히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재지정권이 없다고 보더라도 변경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¹⁹⁾

(2)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확정되는 시점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상법 제733조 제3항 제2문)와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상법 제733조 제4항)에는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보게 되는데, 「보험수익자 사망사」와 「보험계약자의 사망사(또는 보험사고 발생사)」에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다르게 될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²⁰⁾

18) 장경환, 전계논문, 231쪽

19) 한기정, 전계서, 733쪽

보험계약자사망시설(보험사고발생시설)은 상법 제733조 제2항 제2문의 보험계약자 사망이나 상법 제733조 제4항의 보험사고 발생은 모두 보험수익자의 재지정의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사유들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사망 후 재지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재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더 이상 재지정될 가능성도 없게 되므로 이때 비로소 상법 제733조 제2항 제2문이 보험수익자를 새로 정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보험수익자의 사망시에 상속에 의해서 그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에 위 법의 규정에 의해서 원시취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²¹⁾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사망 후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보험수익자의 사망시에 상속에 의해서 그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에(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치유될 수 없는) 보험수익자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상법 제733조 제4항에 의해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²⁾ 보험수익자 사망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확정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재지정할 수 있으므로 그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불확정적인 것이 되므로 법률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²³⁾

그러나 민법상 상속법리에 따르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결정되는 시점은 보험수익자의 사망시가 된다고 보는 보험수익자사망시설이 타당하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상속인의 자격유무도 이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²⁴⁾. 상속 개시시에 피상속인의 법적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²⁵⁾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도 보험수익

20) 장경환, 전개논문, 233쪽

21) 장경환, 전개논문, 233~235쪽

22) 장경환, 전개논문, 237~238쪽

23) 장경환, 전개논문, 235쪽

24)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 능력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지원립, 민법강의(제13판), 2015, 2035쪽).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기에 생존하고 있는지 생존하는 것으로 의제되어야 하며(민법 제1000조 계속의 원칙·동시존재의 원칙) 상속개시시에 상속순위에 있어야 하고(민법 제1000조), 결격(민법 제1004조)으로 인한 자격상실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상속분·유류분을 산정한다(민법 제1008조, 1009조, 1111조 등)(김주수/김상용, 「주석민법 상속법(1)」(제3판), 55쪽)

25)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

자의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⁶⁾ 애당초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재지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보험사고 발생전에는 추상적, 불확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상속인의 권리는 피상속인의 권리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그러한 추상적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여 특별히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하급심 판례로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확정되는 시점은 「보험수익자의 사망시」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4619 판결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 그 사람이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미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는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보게 되는데(상법 제733조 제3항), 이때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4619 판결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甲은 유일한 자녀인 乙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乙의 아버지인 丙과는 이혼한 상태였으며 형제자매들이 생존하고 있었다. 乙이 사망한 후 甲이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甲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

피보험자 甲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보험사)는 보험수익자인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보험사고 발생 전에 乙이 사망하였고, 보험계약자인 甲이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乙 사망시를 기준으로 당시 乙의 상속인인 甲과 丙이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되었고, 甲이 가지는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위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형제자매)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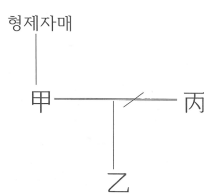
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재산상 권리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포괄승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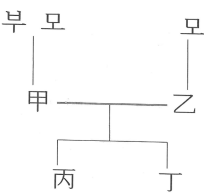
26) 김주수/김상용, 전게서, 2010, 239쪽, 박세민, 전게서, 940쪽, 양승규, 전게서, 461쪽, 장덕조, 「보험법」 제3편, 2016, 459쪽, 정찬형, 「상법강의(하)」, 19판, 837쪽, 한기정, 전게서, 734쪽, 이승환, “보험금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7권 3호, 2017, 380~381쪽

부산지방법원 1990. 6. 1. 선고 90나667 판결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甲이 부인인 乙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고, 甲과 乙 사이에는 자녀 丙, 丁이 있었고, 甲에게는 부모님(원고들)이, 乙에게는 어머니(피고)가 생존해 있었다. 甲, 乙, 丙, 丁이 잠들어있던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乙, 丙, 丁이 사망하고 1시간 뒤 甲이 사망한 사안) 위 화재로 인하여 乙, 丙, 丁이 사망함으로써 甲이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甲의 부모가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인데 甲의 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²⁸⁾

(3)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의 문제

위 (2)항의 사례 사안들은 모두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한 경우이다. 수익자를 추상적으로 법정상속인, 자녀, 배우자 등으로 지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에도 상법 제73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을 문언 그대로 형식적으로 대입하면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자녀, 배우자를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자녀, 배우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하면 그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27)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특정인인 아들로 지정한 사안으로서, 보험계약자사망시절에 따라 경우 甲이 사망할 당시 보험수익자인 乙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고, 수익자사망시절에 따라 경우 乙의 상속인은 甲과 丙이었으므로 사망보험금의 1/2은 甲의 형제자매들이, 나머지 1/2은 丙이 수령하게 된다.

28)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특정인인 부인으로 지정한 사안으로서, 보험계약자사망시절에 따라 경우 甲이 사망할 당시 수익자인 乙의 유일한 상속인인 乙의 어머니가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고, 수익자사망시절에 따라 경우 아직 甲이 살아있었으므로 乙 사망보험금의 2/5는 乙의 어머니가, 3/5는 甲에게 귀속된 후 甲의 부모님이 3/10씩 수령하게 된다(현행 민법에 의한 경우). 구 민법에 의하면 乙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일단 남편인 甲에게 귀속되고 이후 甲의 부모님에게 귀속된다.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 결정(90조정-20, 1990. 8. 22.)도 수익자사망시절에 따라 甲을 보험수익자로 보았다.(장경환, 전게논문, 230쪽)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하면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결정된다는 민법의 상속법리에 반하게 되고, 보험계약 이후 피보험자 사망 사이에 발생한 출산, 양자관계,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혼인, 이혼도 반영되지 못한다. 이러한 결론이 비합리적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므로, 보험수익자를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자녀, 배우자가 수익자로 확정된다고 보면 족하고, 상법 제733조 제4항은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²⁹⁾

추가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자녀, 배우자’ 등으로 추상적으로 지정하였는데 보험사고발생 당시에 모두 사망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상속인 또는 처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³⁰⁾ 경우를 나누어 자녀, 배우자 등 그 범위를 한정적으로 지정하였는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733조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3조가 상속순위를, 제1053조 내지 제1059조에서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속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결하면 족하다고 보인다.

4. 동시사망과 보험수익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살펴본다.

일본 보험법 제46조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전원이 보험수익자로 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시기를 보험수익자가 보험

29) 위 (2)에서 설명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4619 판결의 가족관계(각주 26)에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甲이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유일한 자녀인 乙이 사망한 후 甲이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피보험자 甲 사망 당시 甲의 법정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들이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30) 이승환, 전계논문, 381쪽. II.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독일과 우리나라의 법률은 다른 규정을 취하고 있어 결론을 달리한다.

사고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동시사망에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으로 피보험자가 문제된 사례에서 일본 판례³¹⁾와 학설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구 일본 상법 제676조 제2항³²⁾을 유추적용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다.³³⁾ 즉, 보험수익자의 사망이 보험사고 발생 전후 어느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정책적으로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한 것으로 해석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계열을 보호함으로써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채권자의 강제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³⁴⁾

우리 상법에서도 동시사망의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으므로 형식논리적으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시에 생존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유사하게 되어 상법 제733조 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동시사망의 경우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와 동시에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³⁵⁾

판례도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이때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인 경우도 있는데,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이 추정됨으로 인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이 되는 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대습상속이 가능할 뿐이다.³⁶⁾ 따라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대습

31) 東京高判 昭和 58年11月15日 判示1101.호112面

32) 구 일본 상법 제676조(보험수익자의 사망) ①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33) 노일석, 전계논문, 228~229쪽

34) 노일석, 전계논문, 231쪽

35) 노일석, 전계논문, 231쪽

상속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위 2005두5529 판결에서도 甲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를 아들인 乙로 하여 보험계약 체결하였는데 甲과 乙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乙 사망 당시 유일한 직계존속인 乙의 할머니 丙(甲의 어머니)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이는 甲이나 乙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丙의 고유재산이라고 인정하였다.³⁷⁾ 위 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4619 판결의 사례에 적용하면 甲과 乙이 동시사망한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만이 보험금청구권의 유일한 수익자가 될 것이다.

Ⅲ.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관련 문제

1.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인 동시에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는 다르지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지, 보험수익자에게 일단 귀속한 뒤 그 상속인들이 승계취득하는지 살펴본다.

고유재산설은 상법 제73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보험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사망으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변경되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된다고 해석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간격설은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사자에게 권리가 발생

36) 김용담, 「주석민법 민법총칙(1)」제4판, 2010, 447쪽

37) 丙(모) 다만,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인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甲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丙이 甲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丙의 상속세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³⁸⁾³⁹⁾

그러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일단 보험수익자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그 상속인들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상속재산설이 타당하며, 통설, 판례이다.⁴⁰⁾

보험수익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화된다.⁴¹⁾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기에 생존하고 있든지 생존하는 것으로 의제되어야 하지만(동시존재원칙)⁴²⁾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효과가 아니라 보험계약시 보험수익자 지정으로 인하여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약관상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그 보험청구권이 확정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일 뿐이다.⁴³⁾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순간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와 동시에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38) 박운직, 상속법, 1997, 150쪽, 정진옥, 전계논문, 194~195쪽, 홍진희/김판기,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한국소비자문제연구(40), 2011, 192~193쪽, 전경근, "상속재산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 가족법연구 16권 1호, 2002, 53~55쪽

39) 전경근, 전계논문, 54쪽에서는 고유재산설을 취하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2항을 유추해 해석해본다면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러나 구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2항이 2006년에 각주1)의 현행 독일 보험계약법 제159조 제2항, 제3항으로 개정되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는 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고 발생시에, 취소할 수 없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때에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취소할 수 없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논거이다. 더구나 본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상 통설적 견해는 보험수익자 지정시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논거라고 보인다.

40) 김주수/김상용, 전계서, 239쪽, 박세민, 전계서, 934쪽, 장덕조, 전계서, 461쪽, 지원림, 전계서, 2037쪽, 김선정,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시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며 과세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월간생명보험 434호, 2015. 4. 67쪽, 노일석, 전계논문, 195쪽

41) 한기정, 전계서, 727쪽

42) 김주수/김상용, 전계서, 55쪽

43) 이승환, 전계논문, 2017, 378~379쪽은 보험청구권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겸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전에 피보험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권리의 발생을 미리 예정하여 창설해 둔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 창설방법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사망한 때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 즉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고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므로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법 제733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부부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수익자는 그 중 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는 사안)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이 원칙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2)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이라면 피보험자 사망시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피보험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이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그 자신의 고유한 권리가 되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 된다.⁴⁴⁾

그리고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상속인이란 민법상의 상속인의 개념이나 그 기능이나 범위가 동일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정하는 표준에 불과하다.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에서 생겨나는 고유권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

44) 박세민, 전게서, 934~935쪽, 장덕조, 전게서, 460쪽, 정찬형, 전게서, 835쪽, 한기정, 전게서, 734~735쪽, 장경환, 전계논문, 235쪽

득이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 된다.⁴⁵⁾ 이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법 제733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⁴⁶⁾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시하고 있다.⁴⁷⁾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45) 양승규, 전거서, 459쪽,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상법강의Ⅳ]」 제9판, 2015, 412쪽,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이승환, 전거논문, 380쪽

46)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대법원 201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山下友信, 「保險法」 第3版保證訂版, 2015, 278면 일본의 통설, 판례도 동일

4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⁴⁸⁾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또는 보험계약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의제하고 있다. 위 규정이 위헌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2.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비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나 사망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보험금을 민법 제1009조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할 것인지 균등하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는 명문으로 상속지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일본에서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취득비율은 일본 민법 제427조(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다고 하는 견해와 상속비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다.⁴⁹⁾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견해는 평등비율로 하는 것이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권리 취득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면 보험자가 구체적인 상속분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상법 제733조 제4항은 피보험자 또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49) 노일석, 전계논문, 210~211쪽

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보험수익자가 되어야 할 사람을 정한 것이지 그 비율까지 정한 것은 아니므로 독일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처럼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 제408조 분할채무 원칙⁵⁰⁾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보험금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본다(평등비율설).⁵¹⁾

상속비율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표시되지 않고 단순히 수인으로 나열된 경우에는 각각 보험수익자는 균등한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상속인’으로만 지정하였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비록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고 본다(상속분비율설).⁵²⁾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사해석이고,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법률규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지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균등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⁵³⁾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는 상속분과 밀접불가분의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의사해석에는 수취비율을 상속분에 의한다는 지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⁵⁴⁾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비록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법의 규정에 의해 원시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⁵⁵⁾ 우리 상법이 독일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일부러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위 조항이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보험수익

50)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51) 노일석, 전계논문, 211쪽, 정진욱, 전계논문, 195쪽, 한기정, 전계서, 734쪽

52) 박세민, 전계서, 935쪽, 양승규, 전계서, 459쪽,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전계서, 413쪽, 장덕조, 전계서, 462~463쪽, 김선정, 전계논문, 70쪽, 독일보험계약법 제160조 제1항과 제2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3) 한기정, 전계서, 734쪽, 740쪽

54) 홍진희/김판기, 전계논문, 196쪽

55) 장경환, 전계논문, 239쪽

자의 ‘상속인’으로 정한 취지는 법률이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피보험자 내지 보험수익자의 유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상속분 규정과 그 입법취지가 다르지 않으므로 상법 제733조 제4항은 새로 보험수익자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지위 뿐 아니라 그 상속비율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일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결과적으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보험금을 이들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와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상속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판례도 일관되게 민법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⁵⁶⁾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0. 11. 29. 선고 2000가단18186 판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이라 함은 보험사고발생시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을 의미하고 보험사고발생시의 상속인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상속포기·한정승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재산상속에만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⁵⁷⁾(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

56)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57) 김성태, 전게서, 854쪽, 박세민, 전게서, 936쪽, 양승규, 전게서, 459쪽, 한기정, 전게서, 739쪽, 김선정, 전게논문, 71쪽, 장경환, 전게논문, 239쪽, 독일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 2문은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에 상속인이 될 자격 있는 자들이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의 포기는 보험수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65755 판결).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보험수익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 제1042조에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속결격처럼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구분되는바, 상속인이 사후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⁵⁸⁾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민법 제1026조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이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한정승인의 경우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⁵⁹⁾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중략) 피고들이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다 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에게 보험수익자로서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다 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상속결격

(1) 상속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해치고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경우는 보험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

고 명시하고 있다.

58) 장덕조, 전게서, 462쪽

59)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전게서, 412쪽

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상속이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일단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된다. 이는 보험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상 보험의 신의성실 원칙, 선의성의 원칙, 우연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⁶⁰⁾ 이때 보험수익자는 반드시 특정인으로 지정되어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추상적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로 된 경우도 포함한다.

위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제1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중 한명에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쳐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 자체를 면하는지 당해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만 면책되는지 문제되는데, 전체 보험수익자에 대해 면책된다고 보게 되면 책임원칙에 반하여 나머지 보험수익자들이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해당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만 면책된다고 본다.

그리고 상속결격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결격자는 처음부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서 제외되어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전액을 취득하는 것인지 문제된다.⁶¹⁾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순위로 보험금청구권이 이전하지는 않으므로 선순위나 동순위상속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후순위나 다른 동순위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⁶²⁾ 피보험자를 해친 상속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위 면책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보험의 선의성, 우연성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보험자를 해친 상속인이 취득하였을 보험금액은 다른 공동상속인

60) 양승규, 전거서, 141쪽, 김성태, 전거서, 269쪽

61)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2011, 224면

참고로, 독일보험계약법 제183조 제2항은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그 제3자가 고의로 위법한 행위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 지정은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고 발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62) 홍진희/김판기, 전계논문, 196~197쪽.

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³⁾ 다만 나머지 수익자들(피보험자의 직계비속)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후 보험사고를 야기한 자(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이를 상속하거나 양수받는 경우에는 일단 다른 수익자들의 보험금청구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압류나 양도의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고발생자라도 이를 상속,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⁴⁾

판례 역시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만 보험자가 면책되며 나머지 수익자들에 대해서는 면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었고(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2014. 3. 11. 개정된 상법은 판례의 태도를 반영하여 제73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였다.⁶⁵⁾ 다만, 1990년대부터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은 약관에 의하여 해결되었다.⁶⁶⁾

63) 사법연수원, 전게서, 224쪽

64) 홍진희/김판기, 전개논문, 196쪽

65)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15. 3. 11.]

66)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002. 7. 26. 개정 전에는 제15조)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A는 민법 제1004조 제2호 소정의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결국 B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중략) 보험계약 당시 사망의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되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위 약관의 규정상 보험수익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금부의 예정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가르키는 것일 뿐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 후의 현실의 수익자에 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현실적으로 보험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인 원고들과 A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추정상속인들 중 1인인 A가 피보험자인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는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위 약관규정상 보험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자인 피고는 가해자인 A가 수익할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면하고(3/7), 또한 그 면책된 부분이 나머지 보험수익자가 수익할 부분(각 2/7)에 가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보험수익자들인 원고들도 그 면책부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상속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외의 상속결격

상속인에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상속결격이라 한다.⁶⁷⁾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상속인은 후일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을 할 수 없고, 상속 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그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⁶⁸⁾

상속인에게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외의 민법상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견해가 대립된다. 보험금청구권 취득을 부정하는 견해들 중에는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제1항의 보험자 면책사유와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 두 사유는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을 취득을 긍정하는 견해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및 상법 규정에 따른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상속결격과 무관하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본다.⁶⁹⁾ 특히,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 중 민법 제1004조 제3~5호는 보험계약의 선의성, 우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청구권 취득 긍정설도 타당한 면이 있다.

반면, 보험금청구권 취득을 부정하는 견해는 상속인이 상속결격사유로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상실하고,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의 의사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⁷⁰⁾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받은 자까지의 생활보장을 위해 보험금을 취득시킬 의사였다고 보는 것은 힘들고,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고려하면 상속결격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키는 것은 신의성실 및 공정의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⁷¹⁾ 그리고 상속개시의 경우 민법 제1042조에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려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일단 상속권을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결격의 경우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상속인의

67)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68) 김주수/김상용, 전게서, 222쪽

69) 사법연수원, 전게서, 224면, 한기정, 전게서, 739쪽, 김선정, 전계논문, 71쪽

70) 박세민, 전게서, 935쪽, 장덕조, 전게서, 462쪽, 정진욱, 전계논문, 198쪽

71) 홍진희/김관기, 전계논문, 198쪽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구분된다. 상속인들은 보험계약 및 상법에 규정
에 따른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
험금을 상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피보험자 등의 상속인 지위를 취득해야 고
유재산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속결격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
이 이를 취득하는지가 문제되나 보험의 선의성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법 제
659조, 제732조의2의 면책사유에서 논의와 마찬가지로 상속결격자의 상속분만큼
은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역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례에서 법정상속인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실제 살해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의 면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 법정상속인이 이전에 피보험자를 살해하려다
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입증된 사례에서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되
지 못하고 보험사는 그 사람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그 수익자
의 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지급의무를 부정하였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A는 2002년경 일정한 수익이 적고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처인
B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6개 체결하고 C에게 뺑소니 사고를
위장하여 B를 살해해주면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교사하였으나 실패
하였다. 이후 2004년 A가 실효되었던 보험을 부활시킨 것을 비롯하여 B의 사
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8개 체결한 직후, B가 운전하고 A가 동승한
상태에서 B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보험사기 혐의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교
통사고 관련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였고 C의 제보로 A는 2002년의 살인교사
혐의로만 유죄 판결받았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매년 갱신되어 오던 자동차종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
지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빚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매년 갱신되어 오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경우에는 B의 법정상속인들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A가 2002. 10.경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B를 살해하기 위하여 C를 교사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 비추어, 원고A는 민법 제1004조제1호 소정의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한 자'에 해당하므로 B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 00화재는 원고A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은 원고A가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금 중 원고A의 지분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함)

5. 상속재산분할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실무상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당사자 간의 분할협의,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실무상 처리가 문제된다.

판례는 가분채권·채무와 같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7. 6. 24. 97다8809 판결), 상속인 중 1인이 별도의 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도 인접하여 있는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그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한 경우(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7나58073 판결)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스스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⁷²⁾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합의, 조정도 마찬가지로 유효

72)山下友信, 前掲書, 278면

하다고 보인다. 실무상으로도 상속인들이 소송 외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분할결정, 판결을 받는 경우에 그 분할협의를 따라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지분과 다르게 분할할 경우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대내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채권양도에 준하여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며(민법 제450조), 상속인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우선순위에 의해야 할 것이다.

6. 특별수익, 유류분

(1) 특별수익으로 반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현실의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도록 한 것이다. 증여나 유증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없이 행해진 재산출연으로서 상속인 간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특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제반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수증자는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증여의 가액을 실제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반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증여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한다.⁷³⁾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을 민법 제1008조의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특별수익반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부정설은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보험자가 지급하는 것이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보험 등은 각각 특별한 제도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자로 지정하는 것을 바로 유증에

73) 김주수/김상용, 전계서, 341쪽

준하여 취급할 수는 없고, 특정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특별수익 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⁷⁴⁾

긍정설은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거나⁷⁵⁾,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이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그 재산 속에서 보험료를 지급한 대가라는 실질을 가지며,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준하는 무상처분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을 긍정한다.⁷⁶⁾

반환을 긍정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가산되는 범위에 관하여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 총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시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가산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⁷⁷⁾,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⁷⁸⁾,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에 보험계약을 스스로 해지하였다면 반환받을 수 있었던 ‘계약반환금 상당액’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⁷⁹⁾가 있다.

하급심 판례로서 서울가정법원 2010. 11. 9. 선고 2009느합285 심판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각 해당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곧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을 각 해당자들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⁸⁰⁾

74) 홍진희/김판기, “생명보험금과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의 관계”, 법조, 2012, 218쪽, 원칙적으로 그 피상속인의 의사를 중시해서 생명보험금에 대한 특별수익성은 부정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특별수익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5) 박윤직, 전계서, 149~150쪽

76) 김주수/김상용, 전계서, 344쪽, 한기정, 전계서, 739쪽, 변동열, “유류분제도”, 민사판례연구(제25권), 2003, 838~839쪽, 정구태,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고려법학 제62호, 2011, 286쪽

77) 박윤직, 전계서, 191쪽

78) 변동열, 전계논문, 839쪽(독일의 통설 및 판례도 이와 같다고 한다)

79) 김주수/김상용, 전계서, 345쪽

80)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었는데(最高裁 2004. 10. 29. 決定), 부모 사망 후 자녀 4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보험자인 모 사망 후 형제 중 1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그 1인이 형제 중 유일하게 치매상태인 부모를 간병하고 사망할 때까지 함께 지낸 사정이 있었다. 위 판결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이 일본민법 제903조(우리민법 제1008조와 동일)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시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평가되어야만 하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당해 보험금은 특별수익에 준하여 반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이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준하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저축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심각하게 해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액의 평가시기는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보험금액을 반환액으로 할 경우 실제 반환액이 과다해 질 수 있으므로 현행 상속세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준하여 보험금액을 사망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보험료 전액에 대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반환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⁸¹⁾

(2) 유류분 산정 기초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 상속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유족이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이다.⁸²⁾ 유류분의 산정은 상속개시시 적극재산,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행해진 증여(민법 제1114조 전문),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동조 후문),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민법 제1118조, 제1008조)를 기초로 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이 증여·유증과 같이 재산의 무상처분으로서의 실질적·경제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뿐 아니라 제3자이더라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⁸³⁾

그러나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제3자로 특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의 대상으로 된다'고 판시하고, 특단의 사정으로서 '보험금액, 그 액의 상속재산총액에 대한 비율, 피상속인과 보험수익자의 동거 유무, 요양간호를 비롯한 공헌 정도 등 상속인 및 다른 공동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각 상속인의 생활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위 사안에서 특별수익성을 부정하였다. 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들고 있는 특단의 사정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일본민법 제904조의2)의 산정에서 고려되는 기준들인데 위 판결에서는 특별수익의 무상성을 배제하는 사정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81) 홍진희/김판기, 전개논문, 224쪽

82) 김주수/김상용, 전게서, 362~363쪽, 山下友信, 前掲書, 279~280면

83) 김주수/김상용, 전게서, 370쪽, 정구태, 전개논문, 293~295쪽

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효력에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1114조의 유류분 산정기초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 형평을 해치는 특단의 사정이 있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는 제1008조에 의한 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⁸⁴⁾

우리나라 판례는 찾을 수 없고,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다(最高裁 平成 14年 11月 5日 判決, 2002년). 피보험자는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들이었는데 남편의 여자관계로 인하여 별거까지 하게 된 상태에서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남편에서 자신의 아버지로 변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편은 주위적으로 사망보험수익자 변경이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므로 수익자지위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다. 1, 2심에서 패소한 후 남편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상고하였는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계약자가 사망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일본 민법 제1031조(우리나라 민법 제1114조)에서 규정하는 유증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이것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대가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피보험자의 가동능력을 대신하는 급부도 아니므로, 생명보험금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부정실을 취하였다.⁸⁵⁾

84) 홍진희/김판기,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상법상 고찰”,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2, 316쪽

85) 홍진희/김판기, 전제논문, 314쪽

IV. 결론

첫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가족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이 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결정되는 시점은 보험수익자의 사망시가 된다.

둘째,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인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인 동시에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일단 보험수익자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그 상속인들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상속인이란 민법상의 상속인의 개념이나 그 기능이나 범위가 동일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정하는 표준에 불과하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에서 생겨나는 고유권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이고,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 된다.

셋째,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거나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지위 뿐 아니라 그 상속비율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은 이들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넷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재산상속에만 영향을 미치고 보험금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섯째,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만 상법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되며 나머지 수익자들에 대해서는 면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 상속결격의 경우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보험의 선의성,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해당 법정상속

인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섯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비록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스스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

일곱째, 상속인 중 일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비록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면 이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준하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심각하게 해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긍정할 수 있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제3자'로 특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효력에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유류분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곽윤직, 「상속법」, 1997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 김용담, 「주석민법 민법총칙(1)」제4판, 2010
- 김주수/김상용, 「주석민법 상속법(1)」제3판, 2010
- 박세민, 「보험법」 제3판, 2017
-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2011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2005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상법강의Ⅳ]」 제9판, 2015
- 장덕조, 「보험법」 제3판, 2016
- 정찬형, 「상법강의(하)」 19판, 2017
- 지원림, 「민법강의」 제13판, 2015
- 한기정, 「보험법」, 2017
- 山下友信, 「保險法」 第3版保證訂版, 2015

논문

- 김선정,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시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며 과세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월간생명보험 434호, 2015. 4.
- 노일석,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금융법연구 제7권 제2호, 2010,
- 변동열, “유류분제도”, 민사판례연구(제25권), 2003
- 이승환, “보험금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7권 3호, 2017
- 임채웅,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2

- 장경환,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불행사시의 보험수익자의 확정시점”,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학회지> 제41권, 1993
- 전경근, “상속재산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 가족법연구 16권 1호, 2002
- 정구태,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고려법학 제62호, 2011
- 정진욱,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27호 제2권, 2014
- 홍진희/김판기,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한국소비자문제연구(40), 2011
- 홍진희/김판기, “생명보험금과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의 관계”, 법조, 2012
- 홍진희/김판기,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상법상 고찰”,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2

<Abstract>

Study of legal problems in Insurance Policies and Inheritance

Yang, Hee Seok

Life insurance's main purpose is ensuring the survival of the bereaved family members after they die, so usually someone who is not an insured person is designated as an insurance beneficiary. If the heirs of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obtain the right to claim the insurance, various legal issues occur related to inheritance. However, the commercial law does not have a related regulation, and it causes confusion in practice.

If the heir become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is the inheritor's own property, not inherited property, as it is due to the effect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The intention of the party seems to include not only the status of the heir of the beneficiary but also the inheritance rate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among coinheritor, so the amount calculated under Korean Civil Law is fair. Even if the heir refuses the succession at the time of death of the insured, he/she can take any proceeds. Any beneficiary who intentionally causes the death of the insured is disqualified from receiving the proceeds according to the policy terms. Meanwhile, Korean Civil Law prescribes disqualification of inheriting those who have committed acts referred to in non-ethics behavior. According to the prescription, the disqualification of succession is disqualified from receiving the proceeds according to the policy terms. Although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is the inheritor's own property and not included in the object of consultation division of inheritance property, it is valid in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o include and divide.

When one of the inheritors of a insured is designated as a insurance beneficiary, he/she can take death benefits. However, death benefits has certain points of likeness to inheritance in that is it paid by the his death, in some exceptional cases there is special circumstances that harms the equity of other inheritance seriously, the death benefits can be

regarded as special benefits in Korean Civil Law. And in this case, death benefit as special benefits can be counted on the basi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Key Words : a Determine of Beneficiary, Inheritor, One's Own Property, Inherited Property, Renunciation of Succession, Disqualification of Succession, Division of Inheritance Property, Legal reserve of Insurance, Spcial Benefits